

행 정 자 치 부

주 의 요 구

제 목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

기 관 명 경기도

관 계 기 관 부천시

내 용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42조에서는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

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44조 및 「부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 제13조의2에 따르면, 임용시험은 필기시험·면접시험·실기시험·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하고, 이 중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고,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부천시에서는 2012년 “○○○ 분야” ○○○○○ ○급, “○○○○ 분야” ○○○○○○ ○급, “○○○○○○ 분야” ○○○○○○○ ○급 등 3개 직위(총 3명)에 대한 ○○○○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

서류전형 심사기준은 평정요소별 배점 및 채점기준 설정에 따라 응시자의 합격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함이 시험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적정할 것임에도

응시원서 접수(2012. 7. 26. ~ 7. 30.)가 완료되어 응시자가 확정된 이후인 2012. 8. 1. 서류전형 계획 수립 시 서류전형 심사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특정 조

건의 응시자를 고려하여 서류전형 기준을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었다.

위 서류전형 계획에 따르면 ○○○○ 前 ○○ ○○○, ○○○○ 교수 ○○○, ○○○○ 교수 ○○○, ○○○○○○○ 교수 ○○○, ○○○ ○○○○○과장 ○○○ 등 총 5명을 “○○○ 분야(○○○○ 前 ○○ ○○○, ○○○○ 교수 ○○○, ○○○○ 교수 ○○○)”, “○○○○ 분야(○○○○ 前 ○○ ○○○, ○○○ ○○○○○과장 ○○○, ○○○○○○○ 교수 ○○○)”, “○○○○○○ 분야(○○○○ 前 ○○ ○○○, ○○○ ○○○○○과장 ○○○, ○○○○○○○ 교수 ○○○)”의 서류전형 심사위원으로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(실제 위 5명의 서류전형위원 서약서 확인됨)

부천시인사위원회의 명의의 ‘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’(부천시인사위원회-○○호)에서는 당초 확정된 서류전형 계획과 다르게 위 5명의 심사위원 중 3명의 위원인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이 위 3개의 채용분야의 서류전형 심사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.

특히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(소극적 전형)과 관련하여 “○○○ 분야”의 경우 서류전형 심사위원별 서명이 날인된 심사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, “○○○○ 분야”와 “○○○○○○ 분야”의 서류전형 심사표(1장에 2개 분야를 병기)에는 심사에 참여한 위원으로 위원 ○○○, 위원 ○○○의 서명이 동일한 필체로 날인되어 있었고, 위원 ○○○은 당초 서류전형 계획 수립 시 확정된 심사위원이 아니라 해당 채용시험을 주관하는 ○○○○○○○(지방○○○)이므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서류전형 합격자가 결정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.

또한 면접시험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서류전형에 참여한 위원을 배제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면접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

“○○○ 분야”의 경우 부천시 ○○○○○○○○ 지방○○○ ○○○, ○○○○ 교수 ○○○, ○○○○ 교수 ○○○를, “○○○○○○ 분야”의 경우 부천시

○○○○○○○ 지방○○○ ○○○, ○○○○ 前 ○○ ○○○, ○○○○○○ 교
수 ○○○을 각각 면접시험 심사위원으로 위촉함에 따라 위 ○○○, ○○○, ○
○○, ○○○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모두 참여하게 되었다.

또한 “○○○ 분야”의 경우 ○○○○○○ ○급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
던 내부 공무원인 ○○○이 응시하였으므로 객관적인 시험운영을 위해 면접위원
위촉 등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

해당 채용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한 소속 공무원을 면접시험 심사위원으로
참여토록 하는 등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채용시험의 공
정성 및 객관성을 저해하였다.

이와 같이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결과, “○○
○ 분야(○○○○○ ○급)”의 경우, 서류전형 합격자 2명(○○○, ○○○) 중 부
천시 ○○○○○과에서 ○○○○○○ ○급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○○○
에 대하여 면접시험 심사위원들은 타 응시자인 ○○○과 비교하여 현저한 격차
로 면접점수를 부여하여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였다.

조치할 사항 부천시장은

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